

###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11. 2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11. 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11. 8) 상정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11.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제안이유

- 박물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골자

- 박물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는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단위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박물관 사업발전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관람시간, 관람료, 휴관일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및 제15조)
-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준비단에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박물관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박물관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 조직시스템 운영에 따른 의견을 모으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협의기구로 관장 독자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함
○ 명예관장을 두는 이유는	○ 박물관 자료를 기증한자에 대한 예우를 대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함
○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의 차이는	○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단위로 구성되며, 운

- 조례제정과 박물관을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 현재운영중인 박물관에 준비단을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 영위원협의회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사업 논의 및 우리 시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 박물관대표로 구성하는 기구임
- 관계없음
  - 현재 운영하는 박물관은 소규모로 전시관 특성이 더 강하여 두지 않았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532호
의결년월일	2001. 11. 13 (제91회)

제출년월일 : 2001. 11. 1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명예관장을 박물관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자를 위촉할 경우 정실인사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박물관자료를 시에 기부한자 중 1인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경로우대증은 이미 폐지되어 사용하지 않는 신분증이므로 삭제하고, 준비단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의 활동기간이 불명확함으로 착공일부터 개관일 까지 운영토록 수정
- 부칙의 (경과조치)는 아직까지 박물관 설치 준비단이 구성·운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주요골자

- 명예관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중 1인을 위촉하도록 수정(안 제6조)
- 관람료의 면제대상중 경로우대증은 폐지되어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자로 조정(안 제12조)
- 준비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로 조정(안 제20조)
- 준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비단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무의미하므로 부칙의 경과조치 삭제

###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을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호 “경로우대증”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착공시부터”를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명예관장) ①시장은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12조(관람료의 면제) 2.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p> <p>제20조(준비단운영) ①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 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②(경과조치)박물관 설치준비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14조(명예관장) ①.....자료를 시에 기부한자 중.....</p> <p>...</p> <p>제12조(관람료의 면제) 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p> <p>.....</p> <p>제20조(준비단운영) ①.....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p> <p>.....</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②&lt;삭제&gt;</p>

[수정안 포함]

###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설치하는 등록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기부자”라 함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 자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장) ①박물관에는 관장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장은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0년 이상 박물관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사자격 소지자로서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명예관장) ①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관장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임) 시장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명예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단위로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당해 박물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당해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위원 협의회) ①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시의 박물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박물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1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며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3. 국군의 날에는 군인, 경찰의 날에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4.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민·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특별관람) 학교 등 기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14조(관람거부 또는 퇴관명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는 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기타 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휴관일)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신정연휴,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 할 때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16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난무하는 행위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진열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요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박물관 유치) ①시장은 박물관자료 소장자를 적극 발굴하여 박물관사업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자료 소장자가 기부의사를 표명할 때에는 시장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준비단 운영) ①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설치준비단에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박물관설치준비단 운영요원은 3인 이내로 하며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 및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위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자료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기념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물관의 위치(제3조 관련)

박물관명	위 치	비 고
진·풀생활사 박물관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원	

[별표 2]

## 박물관 관람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짚·풀생활사 박물관	0~3세 어린이 노인(65세 이상)	무료	-	1. 단체요금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다만,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단 체인솔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이라도 단체요금을 적용) 2.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단기 사병, 의무경찰, 전투경 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4~12세 어린이	500	300	
	중·고생 군인	1,000	600	
	어른	2,000	1,200	